

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6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8년 4월 2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위원장 민태승

1. 수정이유

- 시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문을 명확히 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함.

2. 수정주요골자

- 시행에 혼란을 초래할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를 준용토록 함.
(안 제14조)

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·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과태료의 부과,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“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”를 준용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	비 고
제1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및절차) ① 생 략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·령·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	제1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및절차) ① 원안과 같음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“과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”를 준용 한다.	